

(주)우리금융지주 주식의 포괄적교환 관련 FAQ

2026. 04. 28



Q. 포괄적 주식교환이란 무엇인가요?

포괄적 주식교환이란 상법에서 허용한 완전자회사 방법의 하나로 상법 제360조의2에 따라, 완전모회사가 될 회사(우리금융지주)가 완전자회사가 될 회사(동양생명)의 발행주식 전부를 취득하고, 그 대가를 동양생명 주주에게 교부하는 절차입니다.

이 절차가 완료되면 동양생명은 우리금융지주의 100% 완전자회사가 되며, 동양생명 주주는 포괄적 주식교환의 대가로 자본시장법령에 따라 시가 기준으로 산정된 교환비율로 우리금융지주 신주를 받게 됩니다.

Q. 이번 주식교환을 추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우리금융지주는 동양생명을 100% 완전자회사로 편입하여 그룹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보험 부문의 역량 강화를 통한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본 거래를 추진합니다.

- 중장기 동양생명 이익창출력의 그룹내 기여도 강화
- 그룹 일체성 강화로 동양생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유연성 확보
- 중복 상장비용 절감 등 그룹 비용효율성 제고

Q. 주식교환의 주요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4월29일(수)에 주식교환 계약을 체결하고, 7월24일(금)에 주주총회 같은 이사회에서 주식교환을 승인한 후 8월11일(화)에 주식교환하는 일정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증권신고서 심사 등의 절차에 따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단계	일정 / 내용
이사회	[4.24(금)] 주식교환 계약 체결 결의
주식교환 계약 체결	[4.29(수)] 우리금융지주-동양생명 포괄적주식교환 계약 체결
주식교환 공고 또는 통지	[5.06(수)] 우리금융지주의 소규모 주식교환 권리주주 확정 기준일
소규모 주식교환 반대이사 접수	[5.06(수)] 5.13(수)까지 반대이사 통지 가능
이사회(주주총회 같은)	[7.24(금)] 주식교환을 승인하는 이사회 결의
주식교환일	[8.11(화)] 동양생명 완전자회사 편입, 증자(자본금변경) 등기신청
교환신주 상장일	[8.31(월)] 교환신주 상장, 동양생명 상장폐지

Q. 주식교환비율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상장법인간 포괄적 주식교환의 경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5에 따라 교환가격을 산정합니다.

·교환가격 : 이사회 결의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각사별로 ①최근 1개월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주가 ②최근 1주일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주가 ③이사회 전일 종가를 산술평균한 교환가격을 계산한 뒤, 두 가격의 비율로 교환비율이 결정됩니다.

·교환비율 : 우리금융지주 교환가격 34,589원 / 동양생명 교환가격 8,720원 → 동양생명 주식 1주당 우리금융지주 주식 0.2521056주로 교환

Q. 이사회 결의일을 기준으로 교환가격을 정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사회 결의 전일은 주식교환 정보가 시장에 공개되기 직전 마지막 거래일로, 거래 정보가 주가에 반영되기 이전의 가장 객관적인 시장가치를 나타냅니다. 또한 이사회 결의 전일 종가만이 아닌 최근 1개월, 1주일 거래량가중산술평균종가를 함께 반영하는 이유는 단기 주가 변동에 의한 왜곡을 방지하여 양사 주주간 공정한 교환비율을 산출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회사가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자본시장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Q. 1주 미만 주식(단주)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교환비율을 적용했을 때 교환 대상 우리금융지주 주식 수에 소수점 이하(1주 미만) 단주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단주는 주식으로 발행될 수 없기 때문에, 상장일 종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우리금융지주는 교환신주 상장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동양생명 주주에게 단주대금을 현금 입금할 예정입니다.

Q. 이번 주식교환이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우리금융지주는 개정 상법에 따라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 전체'로 확대된 취지를 존중하여, 이번 주식교환 과정에서 두 가지 핵심절차를 사전에 이행하였습니다. 이는 법무부가 개정 상법 시행에 맞춰 제시한 「기업 조직개편시 이사의 행위규범 가이드라인」의 권고사항을 적극 반영한 것으로, 이사회 결의 전 단계에서 구조적·절차적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사외이사로만 구성된 특별위원회 설치 및 심의 : 이사회 결의로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독립적인 사외이사들로 특별위원회를 구성, 설치하여 3차례에 걸쳐 거래목적의 정당성, 거래절차의 적절성, 거래조건의 공정성 심의했습니다.

→ 특별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이사회 결의를 위한 선결 요건으로 기능하였으며, 심의 내용 및 의견은 이사회 의사록 및 관련 공시에 반영됩니다.

·회계법인의 교환비율 공정성 검증 : 독립적이고 전문성을 갖춘 외부 회계법인을 선정,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가치평가 방법으로 교환비율에 대해 공정성을 교차 검증했습니다.

→ 외부 회계법인의 검증은 법령상 의무 사항은 아니나, 개정 상법상 이사 충실의무 이행 및 법무부 가이드라인의 권고에 따라 주주 신뢰 제고를 위해 자발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 외부 회계법인의 검증의견은 교환비율이 공정한 범위내에 위치한다는 전문가 의견이며, 주가 상승을 보장하거나 투자성과를 약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와 함께 주주에 대한 충실한 정보 제공을 위해 주요사항보고서 등 공시서류에 본 주식교환의 목적, 기대효과, 교환비율의 적정성 등을 충실하게 작성할 것이며, 본 홈페이지 FAQ를 비롯하여 우리금융지주 주주대상으로 적극 소통해나갈 계획입니다.

Q. 이번 주식교환에 반대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번 주식교환은 발행 신주가 기발행 주식총수의 1.19% 수준임에 따라 상법 제360조의10에 의거한 소규모 주식교환에 해당되며, 소규모 주식교환에 관한 상법 조항에 따라 우리금융지주는 이사회 결의로 주식교환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상법상 소규모 주식교환에서는 반대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우리금융지주는 이사회 결의 후 주식교환 내용을 공고합니다. 소규모 주식교환 절차에 반대하는 주주는 아래 기간 및 방법에 따라 반대의사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발행주식 총수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주가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면 소규모 주식교환 절차를 중단하고 일반 주식교환 절차로 전환됩니다.

·반대의사 접수기간: 5월6일(수)부터 5월13일(수)까지

·반대의사 접수방법: ① 우리금융지주로 원본을 직접 제출

② 증권회사 등 거래 계좌관리기관이 지정한 일자까지 해당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신청(구체적 사항은 거래 계좌 관리기관에 확인)

※ 상세내용: 소규모주식교환 공고 참고 (5.6일 홈페이지 공고)

Q. 이번 주식교환이 우리금융지주 주주에게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동양생명 주주에게 교부하기 위해 우리금융지주 신주가 발행됩니다. 발행규모는 기발행주식 총수의 1.19% 수준으로 동 규모만큼 지분을 희석효과가 발생합니다.

다만, 중장기적으로는 동양생명 완전자회사에 따른 그룹 수익성 개선, 보험 포트폴리오 강화, 중복 상장비용 절감 등 시너지 효과가 지분을 희석효과 이상으로 주주가치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위 내용은 일반적인 절차 안내로, 투자 판단은 공시 내용을 직접 확인하신 후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Q. 포괄적 주식교환 계약 상대방인 동양생명은 어떤 회사인가요?

동양생명은 1989년 설립된 국내 증권 생명보험사입니다. 35년 이상의 업력을 보유하며, 2009년에는 국내 생명보험사 최초로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였습니다. 대표 브랜드인 '수호천사'는 국내 보험 소비자에게 친숙한 브랜드입니다.

2015년 중국 안방보험그룹에 인수된 이후, 2020년부터 중국 다자보험그룹 산하에 편입되어 운영되다가 2025년 7월 우리금융지주의 자회사로 편입되었습니다.

Q. 추가 정보는 어디서 확인 할 수 있나요?

주식교환 관련 모든 공식 정보는 아래 채널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전자공시시스템(DART) : dart.fss.or.kr
- 메일 문의 : shareqa@woori.dooray.co.kr